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58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윤한홍・박상웅・권성동

김상훈 • 박덕흠 • 최수진

박형수 · 권영진 · 박정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 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 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 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 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동일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구분에 따른다.
- 1.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 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

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 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제53조의2제6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65조의9제1항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 ② (생 략)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
	<u>\$\rightarrow\tau\tau\tau\tau\tau\tau\tau\tau\tau\tau</u>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동
	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u>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u>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
	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
	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u>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u>
	<u>여야 한다.</u>
	<u>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u>
	<u>간 이내에 제15조제1항·</u>
	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
	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
	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

- <u>을</u>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u>것</u>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3
 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
 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 2)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 이내에 제15조제1항

 ·제3항 또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년 이내의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u>제1</u> 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 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생 략)
 -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u>제16조제3항</u>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 원회는 <u>제16조제3항</u>·제16조의 2제5항·제16조의3제5항·제16 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 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 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 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

<u>는 기간 이내에 그 안도에 식</u>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_		
<u>항, 제2항 또는 제3항</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제16조제4항		
·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u>제16조제4항</u>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